

유치권 포기각서

공 사 명 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46-2 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

공 사 기 간 :

준공 예정일 :

(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정의 변동은 발생 될 수 있습니다)

계 약 금 액 :

이와 같이 건축주(소유주) 본인과 건설사 간 위에서 명시한 공사를 진행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이 (주)헤라대부중개로부터 투자를 받음에 있어서 (주)헤라대부중개 담보권 확보를 위하여 본인은 상기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이에 각서합니다.

이와 관련된 하도급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또한 상기 공사 건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 할 수 없으며 공사 업체는 하도급 및 기타 업체에 공사를 발주 전 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유치권포기각서를 첨부하여 (주)헤라대부중개 앞으로 제출한다.

2018년 02월 21일

건축주 및 채무자

주민등록번호 :

시 공 사(개인):

주민등록번호 :